

☎ 주거급여콜센터 : 1600-0777

🌐 마이홈포털 : www.myhome.go.kr

포털에서 마이홈을 검색하고

Search

주거급여 자가진단하세요!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전월세를 지원하고 낯은 집은 고쳐드립니다.”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4인기준 203만원) 이하 가구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인정액 (원/월)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 마이홈 홈페이지(myhome.go.kr)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 활용하여 주거급여 수급여부 판단

※ 수급(권)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월 100% 반영 (단, 장애인사용자동차 제외)

신청인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필요)

신청장소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2 소득·재산 신고서
-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4 임대차(전대차) 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 5 통장사본

※ 필요서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보장가구 확정, 소득·재산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사용대차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됨

※ 온라인 신청시 보장가구의 공인인증서 필요

지원내용

임차가구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구분 (원/월)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	4급지 (그외지역)
1인	233,000	201,000	163,000	147,000
2인	267,000	226,000	178,000	161,000
3인	316,000	272,000	213,000	194,000
4인	365,000	317,000	247,000	220,000
5인	377,000	329,000	258,000	229,000
6인	441,000	389,000	296,000	267,000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주기)	378만원(3년)	702만원(5년)	1,026만원(7년)

지급일

[임차] 매월 20일에 수급(권)자의 계좌로 입금

[자가]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수선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임대하는 주택 등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

